

존경하는 대법관님,

저는 예술가로 살아오며, 우리 사회가 외면해온 진실과 갈등을 정직하게 마주해왔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비롯해 세월호 참사등 지난 20년간 제가 카메라에 담아온 것들은 모두 국가적 재난과 공동체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는 제 개인의 무죄를 호소하기 위함이 아니라,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예술가가 현장에 뛰어들어 진실을 기록하는 행위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헌법적 권리'인지 묻기 위해 섰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침입 행위가 아닙니다. 국가기관이 진실을 왜곡하여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입니다. 1월 19일 서부지법 현장에서 저는 예술가로서 신분을 밝히고 모든 절차와 취재 윤리를 지켰음에도 형법의 틀에 갇혀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저의 신념과 활동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조서에도 남아있듯 경찰은 국회의장실과 JTBC의 도움을 받아 계엄 사태를 촬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감독의 촬영 소스를 강제 압수한 후 나머지 폭도들을 기소하는 데 활용하였습니다. 반대로 감독의 구속영장에는 다른 채증 영상을 사용하여 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마침내 폭처법(공동주거침입)이라는 단체 범죄로 묶어 폭도들과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법 집행 과정이 명분이 없었다는 사실은 일선 형사들이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영등포서 신OO 형사는 “감독님 죄 없는 것 안다. 위에서 전원 구속 지시가 내려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불구속 이후 경찰 조사가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2025년 2월 11일 검찰은 단 한번의 조사도 없이 다중 이라는 틀에 맞춰 특수건조물 침입죄로 기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영화 촬영이 폭력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1년 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절차적 과실을 인지한 원심은 명확한 사유 없이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기각하였습니다.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하지 않기 때문” 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재판 분리 신청 역시 기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심의 답변과 달리 추가 기소된 폭도들은 서부지법 단독심으로 별도 진행했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 내내 나머지 피고인들의 변호인까지 2차 가해가 진행되는 가운데 원심은 수차례의 재판 분리 신청 조차 기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대법관님,

현재 본 사건에 대해 2심까지 탄원에 참여한 총 시민 수는 약 3만여명에 다다르고, 부산국제영화제, 김근태 재단등 총 220 여개 단체가 함께했습니다. 국외로는 IDA(국제다큐멘터리 협회), 유럽감독조합 등 수십여개의 해외 단체가 참여했으며 국내에는 박찬욱 감독님, 국회의장실 박선영 공보비서관, 국립현대미술관 이사빈 큐레이터, JTBC 이가혁 기자는 직접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가혁 기자는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한다면, 예술계를 너머 언론계에도 위축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탄원서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 감독은 재판 이후 JTBC 12.3 내란 다큐멘터리 제작을 시작으로 및 언론사들의 칼럼 기고등으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언론사인 뉴스타파의 제작지원을 받아 내란 및 서부지법 사태를 취재한 영상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모두 자료로 제출되었지만 증거조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언론과 달리 예술가의 공익성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결은 사실과 다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건물 밖에서 아이폰으로 촬영할 수 있었다”는 원심 판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 7조에 의거, 국가기관은 예술가의 창작 행위에 대해 가이드 기준을 정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의 논리에 따르면 12.3 계엄 당일 국회에 들어갔던 기자 그리고 계엄군과 대치했던 시민들 모두 위법한 행동을 한 것이 됩니다. 즉 법원 스스로 민주주의의 정신을 부정한 판결문을 작성한 것이며,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스스로 사문화 시키는 판결을 내렸다 생각합니다

2025년 서부지법 사태는 미 국회의사당 폭력사건에 비견되는 국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실제 이를 보도한 언론사는 보도상을 받았습니다. 당일 저 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수많은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취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모두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한 언론과 예술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결과적으로 취재 활동 자체가 공익성을 뜻합니다. 또한 국회와 마찬가지로 법원 역시 공공 기관입니다. 만약 국가 기관 중 법원만이 성역이라는 주장하는 판사의 이기적인 논리가 정당하다면 폭력의 참혹함을 고발하는 종군기자 역시 전쟁터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전범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검찰은 감독의 촬영이 폭력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1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2심 판결문에 따르면 감독의 촬영 때문에 법원 직원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적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현장 당일 법원 건물이 아닌 외부에서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위대와의 충돌 사태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진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권력과 시위대의 폭력 사태에 대해 기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역시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던 영상 소스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심 판결문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원심은 검찰과 수사기관의 잘못된 관행을 알면서도 묵인하였고, 국가기관 공무원으로서 예술인권리보장법 7조를 스스로 위반하는 판결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권위를 가진 예술기관과 문화 예술인들 그리고 수만명의 시민들의 탄원서의 내용을 묵살하며 감독의 행위가 공익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국가기관이 저널리즘과 예술을 기계적으로 분류하고 상반된 법적 기준을 적용한 것은 헌법의 평등 원칙에 반하는 차별적 법 집행입니다. 하지만 원심은 끝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검찰의 잘못된 기소를 지렛대로 삼아 예술가의 신념과 한 개인의 삶을 파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대법관님,

저는 원심 최후진술에서 "예술가는 무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유죄를 주장할 뿐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2심 최후 진술에서 "예술가의 삶은 단순하다. 나를 지키고 남을 돕는 것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대법관님께 최후 진술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1. 언론과 예술의 공익성을 차별하는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면 왜 헌법 22조가 존재하는 것입니까?
2. 국가기관이 예술가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기준을 만든다면 왜 예술인권리보장법 7조가 존재하는 것입니까? 법원 스스로 법을 무력화 시킨 판결이 문체부 블랙리스트 검열 사태와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3.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자의적인 판사의 판결이 가능하다면 왜 법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대법관님,

저는 과거 박근혜 정권 시절 문체부 블랙리스트에 올라 국가 권력에 의해 지원 배제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뼈아픈 반성을 통해 제정한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법 3조에 따르면 “예술 표현의 자유는 다양하고 창조적인 예술 활동의 조건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6조에 따르면 “예술가의 권리와 지위에 있어 본 법은 모든 법에 우선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심의 판단처럼 예술가의 용기가 유죄가 된다면, 앞으로 닥칠 위기 앞에서 그 어떤 창작자도 용기 내어 진실을 마주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과 존재 이유를 국가 스스로 부정하는 비극입니다.

본 재판이 폭력과 혐오가 아닌,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키고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작동시킨 아름다운 첫 역사적 판례로 남기를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이 헌법적 가치인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는 진정한 문화국가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대법관님의 현명하고 정의로운 파기환송 판결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6년 4월27일

피고인 정윤석 드림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appearing to be '정윤석' (Jung Yoon-seok), written in a fluid, cursive style.